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가스공급설비)

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사무 위임조례」 제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신설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7월 01일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

○ 유통 및 공급시설(가스공급설비)

1. 도시계획시설 결정(신설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 결정(신설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신설	4-2	RE100 수소 시범단지	구좌읍 행원리 15번지 일원	-	증) 4,695	4,695	2026. 7. 1.	-

나.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 결정(신설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4-2	RE100 수소 시범단지	○ 가스공급설비 신설 - 면적 : 4,695㎡	○ ‘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 개발’ 사업을 위해 대상 부지에 대하여 「국토계획법」 제43조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가스공급설비)으로 결정하고자 함.

- ## 〈참 고〉 붙임도면

